

<그림 19> 이동식 크레인 공법에 의한 철탑 조립작업

- (나) 성토 장소나 지반이 불량한 경우에는 침목, 복공판, 철판 등으로 보강하여 지반 무너짐이 없도록 안전하게 조성해야 한다.
- (다) 부재 등을 들어 올리는 장소의 지상 근로자는 직하로부터 대피하여 떨어 짐 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라) 공구 등을 철탑 상부로 운반 시에는 공구 운반함을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.
- (마) 크레인 운전시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중량물을 운반해서는 안 되며, 정격 경사각 범위 내에서 운전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바) 운전자는 정해진 신호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고, 중량물을 매단채로 운전 위치를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.
- (사) 상부재의 짐 걸기는 반드시 슬링 등 적절한 기구를 사용하여 걸어야 하고, 작업 시작 전에 슬링 등의 이상유무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.
- (아) 철재류 등은 지상으로 끌거나 던지는 경우가 없도록 운반하고, 훅(Hook) 및 운반기구에 의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자) 기상악화 등으로 철탑 조립작업 중지 시에는 지브는 철탑 주주재 등의 사이에 가능한 한 눕혀 놓고, 훅은 최고 위치에 감아놓아야 한다.
- (10) 철탑 조립작업 중 근로자 떨어짐 방지와 공구, 부재 등의 떨어짐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 1 수평재 완성 후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. 안전방망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은 추락방망 설치지침(KOSHA GUIDE C-31-2011)에 따른다.